4. 논문 관리 업무

가. 논문신고

논문발표시 발표전 20일전까지 MIS를 통하여 주관부서(연구성과확산실)의 협조(승인)를 받아야 한다. 논문 등은 발표나 게재 전에 차후 지적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된 기술은 지식재산권 출원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논문 발표(게재)자가 발표후 1개월 이내에 발표(게재)자료를 첨부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실적 으로 발표일 기준으로 등록 및 집계된다.

[표 36] 논문관리내부규정 - 직무발명관리요령

- 제 9조의 2(기술정보 등의 대외발표) ①직무와 관련한 연구논문, 연구활동결과 등의 기술정보를 대외발표(게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표 또는 투고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별표 제7호]에 의거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8. 8. 29.) ②발표(게재)후 1개월 이내에 발표(게재)한 자료를 첨부(컴퓨터화일포함)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5)
- 제 13 조(비밀유지) ①직원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연구원이 특허를 기 출원하였거나 연구원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그 내용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②연구원의 결정에 의해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연구원이 승계하되 특허출원은 하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기술비결(Know-How)등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는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하지 않기로 한 발명에 관하여 동의(소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한 발명자가 연구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연구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논문 성과 평가

[표 37] 논문 및 표준화 실적 반영기준

- □ MIS 등재된 개인지분율 Data 합계를 부서실적으로 인정
 - 본부의 목표는 하위부서 목표자 인원기준으로 적용(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이상 근무자, 본 부장 제외)
 - 실적반영 시 실무부서 자료 활용
 - 논문 : 1인당 2.0p
 - 책임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1차적 책임저자의 요청에 따른 비율로 배분
 - 책임저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 · 책임저자(0.7%), 공저자 1인(0.3%)

· 책임저자(0.5%), 공저자다수(0.5%/n)

- 국내논문 2.0p 기준 실적 반영기준
 - SCI: 4.0p
 - 국제학술지 게재 : 3.0p
 - 국제학회발표 및 국내학술지(국내논문) 게재 : 2.0p
 - 국내학회발표 : 1.0p
 - 기타 EIC 기술원고 등 : 1.0p(단, 부서인원 × 0.4p까지 인정)
- 표준화활동 실적 반영기준 (국내논문 2.0p 기준 대비 실적 반영)
 -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기술 채택 : 5.0p
 - 사실상표준화기구 표준기술 채택 : 4.0p
 - 지역 및 국가표준화기구 표준기술 채택 : 3.0p
 - 표준화기구 CD(Committee Draft) 제출, 표준화기구 표준기술 제안 : 1.0p

논문 등의 평가는 매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서 성과목표계획(평가항목, 배점)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1편의 논문에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는 위에서 정한 지분의 배분 기준에 따른 가중치에 의한 실적으로 반영한다. 지분배분은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결정에 의함이 원칙인 바, 외부인이 책임저자일 경우에는 논문 실적 등록시 지분 배분에 관하여 책임저자의 지분에 관한 증빙(확인서 또는 요청서)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 * SCI 논문은 발표처가 톰슨로이터사(Thomson Reuters) 사이트 Master Journal List에서 검색하여 SCI로 확인된 Journal의 논문만을 인정한다.
- * SCI-E는 SCI급과는 엄격히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취급